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원격회의 제도의 도입(안 제40조의5제8항)

가. 제・개정 이유

○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 분쟁조정 대상 또한 확대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해 영상·음성 원격회의(전화회의 등) 등 비대면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

나. 제・개정 내용

○ 원격회의 제도의 도입(안 제40조의5제8항 신설)

- 위원, 당사자, 또는 이해관계인이 음성 또는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비대면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통해 통신분쟁조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음